-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·감독실태 - 【 초동대응 및 구조활동 분야 】

감 사 원

징 계 요 구

제 목 진도VTS센터 해상교통관제업무 부당 수행 등

중앙행정기관 해양경찰청

관계 기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본청

징계 대상자 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B

- ②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C
- ③ 목포해양경찰서 1006함 D (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팀장)
- ④ 목포해양경찰서 1006함
 E
 (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팀장)
- ⑤ 목포해양경찰서 310함F(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팀장)
- 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G (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팀장)

⑦ 서해지방해양경찰청H(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

관제팀장)

⑧ 서해지방해양경찰청I(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팀장)

⑨ 서해지방해양경찰청J(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)

징계 종류① B(정직) ② C(정직) ③ D(정직) ④ E(정직) ⑤ F(정직) ⑥ G(정직)⑦ H(정직) ⑧ I(정직) ⑨ J(해임)

징계 사유

위 사람들 중 B와 C는 2013. 2. 4.부터 2014. 6. 20. 현재까지, D와 E¹⁾는 2009. 6. 22.부터 2014. 2. 9.까지, F는 2010. 1. 4.부터 2013. 2. 3.까지, H은 2010. 1. 4.부터 2014. 6. 20. 현재까지, G와 I은 2014. 2. 10.부터 2014. 6. 20. 현재까지, J은 2011. 4. 18.부터 2014. 6. 20. 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 또는 직위에서 해상 교통 관제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(이하 "진도VTS센터"라 한다)의 업무를 총괄하였다.

1. B와 C의 경우

위 사람들은 2014. 4. 16.(이하 같다) 세월호가 병풍도 인근에서 침몰할 당시 사고 해역[진도VTS센터 관제구역2) 2센터(이하 "2센터"라 한다)]에 대하여 각각

¹⁾ E은 2014. 2. 10. 목포해양경찰서 1006함으로 전보되었다가 진도VTS센터 소속 직원 5명이 구속 수감된 이후 관제업무의 단절을 피하기 위해 같은 해 6. 27. 진도VTS센터 지원근무 수행 중임

²⁾ 진도VTS센터의 관제구역은 약 3.800km²로 유조선 통항 금지선 내측(연안 쪽)을 1섹터, 외측(먼 바다 쪽)을 2섹터로

하여 전용 함정이나 헬기 등이 없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특공대와 122구조대 등 구조전문 요원들이 함정이나 헬기에 탑승하여 사고현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, 구조세력이 사고선박의 탑승인원 등도 모른 채 구조에 임하는 일이 없도록 탑승인원, 침몰상황 등 사고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전파하도록 지휘하여야 했다.

특히, 현장지휘 책임자인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상황 전파나 구조세력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,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속 특공대나 헬기 등과 군산, 완도 등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다른 해양경찰서의 구조세력에 대한 지휘가 원활하지 못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구조 활동을 지휘하였어야 한다.

그런데도 위 사람은 효율적인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해지방해양 경찰청 상황실에서 구조인력의 현장 이동 수단을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지시하지 않았고, 세월호 탑승인원이나 침몰상황 등 사고 상황이 제대로 전파 되지 않고 있는데도 위 상황실에 상황전파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.

그 결과 특공대의 경우 지휘체계 혼선으로 출동 대기인지 출동 지시인지 모르고5) 우물쭈물하다가 09:35경 출동하면서 이동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목포 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나갔다가 뒤늦게 전남지방경찰청 헬기를 지원받아 특공대원 7명을 태우고 10:25경 출동하여 11:35경에야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, 군산해양경찰서 122구조대의 경우 군산항공대 소속 502호 헬기를 이용하여 즉시 출동할 수 있었는 데도 사고를 보고받은 지 33분이 지난 09:33경 출동을 지시하여 11:05경에야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다.

⁵⁾ 특공대 ◆팀장 Y은 09:15경 자신에게 전달된 명령이 "출동준비 대기"였으므로 즉시 출동하지 않았다고 진술